

ESG

거부 반응은 줄이고 수용 확률은 높이는 주주제안 전술

▶ Analyst 엄수진 sujineom@hanwha.com 3772 7407



[회사가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 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상장회사 한정)
-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
-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

국내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서도 기업이 모든 주주제안을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거나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이거나 과거 낮은 찬성률로 부결됐던 안건을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또 제안하는 경우 등에는 기업이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다. 기업이 주주제안을 거부했을 때 그 절차나 근거가 정당했는지 여부를 따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기는 하지만 주주제안을 처음에 이행할 때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제안의 내용을 구성하면 기업 측이 이를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수용할 것이고 성공적인 내재화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기업이 모든 주주제안을 수용해야 하는 건 아니다

국내에서는 상법, 미국에서는 SEC 규칙, 유럽에서는 주주권리지침(SRD)에 기업이 주주제안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 또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D사 사례: 10년 넘게 동일한 내용의 주주제안 안건 부결

D사의 소액주주 연대는 2016년부터 올해 주주총회까지 매년 주식배당 안건을 주주제안으로 상정하였으나 매년 부결되었다. 무려 11년 연속 주주총회 표결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주주제안 건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이 행사된 주식 수 기준 10.6%의 찬성표 밖에 얻지 못했다. D사의 현금배당성향은 동종 업계 평균 대비 매우 저조한 편이다. 회사 측은 “주주들이 주식배당을 요구하지만 그보다 성장을 위한 투자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S사 사례: 주총에서의 정면충돌이 아닌 원만한 합의로

행동주의 펀드인 A 자산운용사는 2022년 2월, S사의 저평가 원인으로 당시 최대주주의 개인회사와 S사 간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용역 계약을 지적하며 주주서한을 발송했다. 같은 해 3월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A 자산운용사가 추천한 후보가 감사로 선임되었다. 이듬해 초에는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A 자산운용사가 제안하는 12개 사항과 관련해 양사 간 합의에 이른다. 제안의 내용은 A 자산운용사 대표를 S사의 이사로 선임,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보상위원회 설치, 1년 간 진행됐던 공개주주 캠페인 종료 및 주주대표소송 철회 등이었다.

기업이 모든 주주제안을 수용해야 하는 건 아니다

국내 상법에 따라 회사의 이사회는 주주제안으로 제출된 안건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찬성률 10% 미만으로 부결된 안건을 3년 내로 다시 제안하는 경우,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기업이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가 제안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지 않은 회사의 이사, 감사 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연히,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특정 지분을 이상, 특정 보유기간 이상)에 미달하거나, 접수 기한이 도과한 경우에도 회사가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다.

회사가 부당하게 주주제안을 배제했다고 판단하는 주주는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이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표1] 주주제안의 요건

구분	내용	관련 법령
자격	· (비상장회사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 ·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1천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상법 제 363 조의 2 제 1 항, 제 542 조의 6 제 2 항
방법	·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행사 -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6주 전	상법 제 363 조의 2 제 1 항
제안사항	·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속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상법 제 363 조의 2 제 3 항

자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법제처,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2] 주주제안에 대한 회사의 의무

구분	내용	관련 법령
회사의 의무	· 이사는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함 ·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법에서 정하는 경우^{주1} 외에는 이를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야 함	상법 제363조의2제3항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 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주2}인 경우 ·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 ·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	상법 시행령 제12조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제안 미상정 시 처벌	·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상법 제635조제1항제21호

주1: 아래 행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참고

주2: 법 제54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장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만 해당

자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법제처,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상장회사가 주주제안을 배제하고자 할 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 기업금융국 실무진이 '이의 없음' 판단을 내리던 관행이 전면 중단되게 되었다.

SEC 기업금융국은 8월 14일 발표를 통해 SEC 규칙 § 240.14a-8 관련 No-Action 요청*에 더 이상 응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관행 중단은 즉시 적용된다. 해당 조항은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 주주제안 제출 기한, 회사가 주주제안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 주주제안을 배제하려는 회사가 수행해야 할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비조치 의견서 요청이라고도 하며, 기업이나 기관이 어떤 행위를 하기에 앞서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감독당국의 추후 제재 가능성 등에 대해 미리 확인을 받는 제도)

§ 240.14a-8(i)에는 회사가 주주제안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나열되어 있는데 주주제안의 내용이나 성격이 법규를 위반할 때, 개인의 불만·고충과 관련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한 목적일 때, 회사가 제안사항을 수행할 역량이나 권한이 없을 때, 이사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임기 만료 전 이사를 해임하려는 내용일 때, 과거 3년 내에 저조한 찬성률로 부결된 적이 있는 안건을 재상정할 때 등이다.

종전에는 회사가 특정 주주제안을 제외할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SEC 기업금융국에 No-Action 요청을 냈고, SEC 실무진은 이에 대해 비공식 견해를 회신해 왔다. 이제 이 관행은 종료되었지만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자료에서 제외하려는 회사는 규칙 § 240.14a-8(j)에 따라 제외하려는 사유 등을 기재한 서류를 SEC에 여전히 제출해야 한다.

상장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는 이제 SEC 실무진의 판단과 지침 없이 전적으로 주주제안 배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주주제안 배제 의사결정을 더 신중하게 수행해야 한다. 회사들은 § 240.14a-8(i)에 규정된 13가지 배제 근거, 관련 판례, SEC의 과거 No-Action 의견서를 토대로 각 주주제안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주주제안 배제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문서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더 높아진 소송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주주제안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근거에 따라 배제되었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은 법원이다. 주주가 이사회와 직접 협상을 시도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들은 SEC 실무진의 판단 전례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거나, 지침의 일관성이 없었거나, 최근 사례가 거의 없고 판단의 시점이 오래된 영역에 속하는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특히 더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소송 등 표면적인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주주 측과 주주제안 사항의 철회 또는 수정을 사전에 교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US SIF, Interfaith Center on Corporate Responsibility 등 투자자 단체는 주주 연대 캠페인 겸 플랫폼인 'Protect Shareholder Voice'를 통해 SEC가 종전 제도를 유지할 것을 청원했다.

[표3] SEC 규칙상 주주제안 배제 관련 내용^{주1}**§240.14a-8 Shareholder proposals.**

- (i) Question 9: If I have complied with the procedural requirements, on what other bases may a company rely to exclude my proposal?
- (1) Improper under state law: If the proposal is not a proper subject for action by shareholders under the laws of the jurisdiction of the company's organization;
 - (2) Violation of law: If the proposal would, if implemented, cause the company to violate any state, federal, or foreign law to which it is subject;
 - (3) Violation of proxy rules: If the proposal or supporting statement is contrary to any of the Commission's proxy rules, including § 240.14a-9, which prohibits materially false or misleading statements in proxy soliciting materials;
 - (4) Personal grievance; special interest: If the proposal relates to the redress of a personal claim or grievance against the company or any other person, or if it is designed to result in a benefit to you, or to further a personal interest, which is not shared by the other shareholders at large;
 - (5) Relevance: If the proposal relates to operations which account for less than 5 percent of the company's total assets at the end of its most recent fiscal year, and for less than 5 percent of its net earnings and gross sales for its most recent fiscal year, and is not otherwis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company's business;
 - (6) Absence of power/authority: If the company would lack the power or authority to implement the proposal;
 - (7) Management functions: If the proposal deals with a matter relating to the company's ordinary business operations;
 - (8) Director elections: If the proposal:
 - (i) Would disqualify a nominee who is standing for election;
 - (ii) Would remove a director from office before his or her term expired;
 - (iii) Questions the competence, business judgment, or character of one or more nominees or directors;
 - (iv) Seeks to include a specific individual in the company's proxy materials for election to the board of directors; or
 - (v) Otherwise could affect the outcome of the upcoming election of directors.
 - (9) Conflicts with company's proposal: If the proposal directly conflicts with one of the company's own proposals to be submitted to shareholders at the same meeting;
 - (10) Substantially implemented: If the company has already substantially implemented the proposal;
 - (11) Duplication: If the proposal substantially duplicates another proposal previously submitted to the company by another proponent that will be included in the company's proxy materials for the same meeting;
 - (12) Resubmissions: If the proposal addresses substantially the same subject matter as a proposal, or proposals, previously included in the company's proxy materials within the preceding five calendar years if the most recent vote occurred within the preceding three calendar years and the most recent vote was:
 - (i) Less than 5 percent of the votes cast if previously voted on once;
 - (ii) Less than 15 percent of the votes cast if previously voted on twice; or
 - (iii) Less than 25 percent of the votes cast if previously voted on three or more times.
 - (13) Specific amount of dividends: If the proposal relates to specific amounts of cash or stock dividends.
- (j) Question 10: What procedures must the company follow if it intends to exclude my proposal?
- (1) If the company intends to exclude a proposal from its proxy materials, it must file its reasons with the Commission no later than 80 calendar days before it files its definitive proxy statement and form of proxy with the Commission. The company must simultaneously provide you with a copy of its submission. The Commission staff may permit the company to make its submission later than 80 days before the company files its definitive proxy statement and form of proxy, if the company demonstrates good cause for missing the deadline.
 - (2) The company must file six paper copies of the following:
 - (i) The proposal;
 - (ii) An explanation of why the company believes that it may exclude the proposal, which should, if possible, refer to the most recent applicable authority, such as prior Division letters issued under the rule; and
 - (iii) A supporting opinion of counsel when such reasons are based on matters of state or foreign law.

주1: 주석은 제외

자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EU 유럽연합(EU)이 기업 주주총회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규율하는 주주권리지침(Shareholder Rights Directive, 이하 ‘SRD’) 개정에 나선다. 회원국마다 다른 주주권 행사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준도 개정 논의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회원국마다 제각각인 주주권 행사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국가별로 주주총회 운영 방식과 의결권 행사 시점, 주주 식별 및 정보 전달 방식이 달라 국경 간 주주권 행사에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유럽에서는 최근 기후 변화와 기업지배구조를 둘러싼 주주제안이 기업의 판단이나 법원 결정으로 주주총회 안건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일례로 지난 2024년, 스위스 지속가능투자 재단 에토스 재단(Ethos Foundation)은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에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의장직을 분리할 것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토탈에너지스가 이를 주주총회 안건에 포함하지 않자 에토스 재단은 프랑스 상사법원에 법적 절차를 제기했다. 2023년에는 유럽 연기금들이 독일 폭스바겐(Volkswagen)에 기후 관련 로비 활동 공개를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추진했지만 독일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주주제안을 둘러싼 이 같은 기업-주주 간 갈등 사례들은 기업 내부 활동과 관련된 사안을 주주가 어디까지 주주총회 안건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SRD 개정 논의에서는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에서 제외할 수 있는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하고, 회원국마다 다른 주주제안 제출·상정 절차를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유럽 지속가능투자포럼(Eurosif)도 EU 집행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주주 권리를 강화할 것과, 기후·자연·지속가능성 사안을 주주총회에서 표결할 권리를 EU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안은 2027년 1분기까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Responsible Investor, IMPACT ON)

기업이 거부하는 주주제안, 받아들이는 주주제안

D사 사례:
10년 넘게 동일한 내용의
주주제안 안건 부결

D사의 소액주주 연대는 2016년부터 올해 주주총회까지 매년 주식배당 안건을 주주제안으로 상정하였으나 매년 부결되었다. 무려 11년 연속 주주총회 표결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주식배당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의 일부를 현금이나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배당이다.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주주제안 건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이 행사된 주식 수 기준 10.6%의 찬성표 밖에 얻지 못했다.

참고로 D사의 2026년 1분기 말 기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지배주주 일가, 계열회사, 임원 등 포함)의 지분율은 38% 수준이다. D사는 주주제안 안건이 상정된 11년 간 주식배당 없이 현금배당은 지속적으로 지급해 왔다.

D사 주주들의 주식배당 요구는 D사의 주주환원이 미흡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됐다. D사의 현금배당성향은 2020년 4.2%, 2021년 5.3%, 2022년 4.1%, 2023년 2.7%에 불과했고, 2024년에 14.1%로 전년 대비 11.4%p 상승했지만 여전히 동종업계 평균에는 크게 못 미쳤다. 2025년에는 현금배당성향이 4.7%로 다시 하락했다.

회사 측은 “주주들이 주식배당을 요구하지만 그보다 성장을 위한 투자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 사례는 기업이 주주제안 상정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지만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내용의 주주제안 안건이 계속해서 부결되었고 기업 측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인 주주 관여활동이 되어 버린 경우이다.

S사 사례:
주총에서의 정면충돌이 아닌
원만한 합의로

행동주의 펀드인 A 자산운용사는 2022년 2월, S사의 저평가 원인으로 당시 최대주주의 개인회사와 S사 간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용역 계약을 지적하며 주주서한을 발송했다. S사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최대주주의 개인회사에 용역 대금, 로열티 등의 명목으로 지급해 왔다.

같은 해 3월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A 자산운용사가 추천한 후보가 감사로 선임되었는데, 눈여겨 볼 점은 주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S사 내부적인 논의 결과에 따라 회사가 추천한 사내외이사, 감사 후보들이 주주총회 개최 전에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연이어 10월에는 S사 이사회가 문제의 최대주주 개인회사와의 용역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의했다.

이듬해인 2023년 1월, 즉 2023년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A 자산운용사가 제안하는 12개 사항과 관련해 양사 간 합의에 이른다. 제안의 내용은 A 자산운용사 대표를 S사의 이사로 선임,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보상위원회 설치, 비핵심자산 매각, IR 및 주주 커뮤니케이션 강화, 주주환원 확대, 1년 간 진행됐던 공개 주주 캠페인 종료 및 주주대표소송 철회 등이었다.

특히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통해 후보 추천 절차상의 독립성을 확보한 점, 사내이사가 아닌 이사와 감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 설치를 통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관계회사, 자회사들과의 모든 거래에 관해 면밀히 검토하는 절차를 수립한 점, 사내이사가 아닌 이사로 전원 구성된 보상위원회에 경영진 성과 평가, (임원) 보상 수준 및 보상 형태 결정 권한을 부여한 것 등은 일회성의 변화를 강압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라 기업 스스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훌륭한 제안이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동 사례의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이 맞물려 기존 최대주주 중심의 경영 구도를 쇄신하려는 측에서 적극적으로 거버넌스 개선을 추진한 면이 있다.

[표4] S사 이사회 내 위원회 2026년 반기말 구성 및 반기 중 운영 현황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주1}	개최횟수 ^{주2}	안건 수 ^{주2}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독립이사 4명	1	3
내부거래위원회	독립이사 3명	3	4
보상위원회	독립이사 3명	2	2
ESG위원회	독립이사 3명	2	3

주1: 2026년 6월 말 기준

주2: 2026년 1월 1일~2026년 6월 30일 기간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주제안 상정→통과→내재화까지: 성공률을 높이는 전술

거부 반응은 줄이고
수용 확률은 높이는
주주제안 전술

회사의 경영진·이사뿐 아니라 IR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실무진들이 주주 관여활동을 달갑지 않게 여기거나, 심지어 두려워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아무리 합법적인 관여활동이라 해도 회사 내부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간섭이나 참견으로 여겨질 수 있고, 심지어 이러한 관여활동에 대응하느라 기업의 자원이나 역량이 과다하게 투입될 경우 결국 기업가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기업의 특정한 의사결정이나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소액주주의 권익을 명백히 침해하거나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도, 노골적으로 문제점을 지적·비판하거나 급격한 변화를 독촉하면 기업 측의 저항과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우선은 완곡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론에서 설명하였듯, 국내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서도 기업들이 주주제안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와 근거가 법규에 마련되어 있다. 주주제안이 만일 부당하게 거부되었거나 기업 측이 제시한 주주제안 배제의 사유나 기준이 모호하다면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 주주를 위한 구제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까지 비화되기 전에 기업들이 해당 주주제안을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수용하게 하고, 비록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기업들이 스스로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보호 노력을 이어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기업의 자정 노력(Self-correcting)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주주제안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가 있더라도 이를 처음부터 명시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거나 우회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적인 접근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예컨대 대표이사의 보상과 관련해 기본급 또는 보수한도의 축소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기 보다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또는 성과에 연계된 임원 보수 체계를 마련해서 제시할 수도 있다.

사익편취나 부당지원행위의 중단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 대신에 내부거래위원회 설치나 이사회 또는 내부거래위원회 승인을 요하는 내부거래의 기준(예: 특정 금액 이상, 매출액의 특정 비율 이상 등)이 담긴 규정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주당 배당금 확대,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보다 밸류업 계획 공시를 요구하거나, 이미 공시 중이라면 공시의 양과 질을 더 제고하라고 주문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D사의 경우 주주의 요구 방식이 강경하거나 요구 내용이 무리해서 기업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보다는, 기업집단 차원의 자원 배분(예: 공장 건설, 계열회사 지원 등)에 관련된 이유로 주식배당 요구가 10년 넘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D사가 아직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밸류업 공시부터 개시하라고 제안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기 시작하면 꼭 주식배당이 아니더라도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